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 1.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정순옥 의원 등 9명
- 발의일자: 2025. 11. 1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12. 1.)

### 2. 개정이유
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달서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, 아동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2항)

## 4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모의 가출·이혼·별거·질병·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의 증가와 경제·사회·문화·정서적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 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것으로,
-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서 종합적인 빈곤 아동정책 수립과 관계기관 간의 연계·조정·상호협력을 위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 위원회를 두고,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